

바. 건강검진

(1) 특수건강검진

① 특수건강검진 개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특수건강검진 대상	특수건강검진 제외	특수건강검진 주기/항목	특수건강검진 재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물질 취급 시 취급 시간에 관계없이 특수건강검진 대상임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 활동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에 따른 임시작업과 단시간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 가능 ※ 발암성/생식세포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취급자는 제외 불가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매월 수행 시 상시취급에 해당) *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수행 시 상시취급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	특수건강검진의 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 가능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아간작업
가. 유기화합물(109종) 나. 금속류(20종) 다. 산 및 알칼리류(8종)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마.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가. 곡물 분진(Grain dusts) 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용접 흄(Welding fume) 바.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사. 석면 분진(Asbestos dusts)	가. 소음작업: 1일 8시간 기준 85dB 이상의 소음 발생 작업 나. 강렬한 소음작업: 해당 작업 - 90dB 이상 소음 1일 8시간 이상 - 95dB 이상 소음 1일 4시간 이상 - 100dB 이상 소음 1일 2시간 이상 - 105dB 이상 소음 1일 1시간 이상 - 110dB 이상 소음 1일 30분 이상 - 115dB 이상 소음 1일 15분 이상 다. 충격소음작업: 15.0m/sec ² 이상 120dB 초과 소음 1일 1면회 이상 - 130dB 초과 소음 1일 1면회 이상 - 140dB 초과 소음 1일 1면회 이상 라. 진동작업: 작업기, 체인톱, 동력이륜 해머/연삭기, 인진커터, 임팩트 렌치 등 마. 방사선 / 고기압 / 저기압 바.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 시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시

대상 확인 절차

```

graph TD
    A[대상 확인 절차] --> B[유해물질 및 유해인자 취급]
    B -- 아니오 --> C[특수/일반검진 미대상]
    B -- 예 --> D[MSDS 등 확인결과 특수건강검진 대상]
    D -- 예 --> E[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을 상시 취급하는지?]
    E -- 아니오 --> F[일반건강검진 대상]
    E -- 예 --> G[임시작업/단시간작업]
    E -- 예 --> H[상시취급]
    G --> F
    H --> I[특수건강검진 및 일반건강검진 대상]
    
```

(예시 1) 아세톤

유해인자 해당 (화학적 인자) → 15. 법칙 규제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기준)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기준)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기준) → 일반건강검진 대상

(예시 2) 벤젠

유해인자 해당 (화학적 인자) → 15. 법칙 규제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기준)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기준)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기준) → 특수건강검진 및 일반건강검진 대상

② 특수건강검진 신청 및 확인

등록 전 준비 및 확인사항

1. 연구실종사자 등록여부 확인

- 유해인자를 취급하고 있는 연구실에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당 연구실에 등록된 유해인자 선택 가능

- 2개 이상의 연구실에 출입하는 경우, 연구실마다 각각 등록

※ 실험실습교과목 수강만을 위해 연구실을 출입하는 학부생 등은 연구실종사자로 미등록(조사대상 아님)

연구실관리
안전교육
안전점검·진단
화학물질·가스

연구실정보
종사자정보
안전표지

☐ 구분

☐ 책임자

☐ 등록

☐ 등록

2. 유해인자 물질 등록

- 해당 연구실에서 취급 중인 화학물질을 등록

화학물질
CAS No.
화학물질명
화학물질명

화학물질명	CAS No.	화학물질명	화학물질명
Benzene	71-43-2	Benzene	71-43-2
N,N-Dimethylaniline, 98...	121-69-7	N,N-Dimethylaniline, 98...	121-69-7
Potassium permanganate, EP, 500g	7722-64-7	Potassium permanganate, EP, 500g	7722-64-7

→ 미등록 시 유해인자 선택 불가

→ 유해인자 선택 가능

- 화학물질 등록 절차는 '화학물질관리 가이드' 참고

특수건강검진
신청화면으로
이동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특수건강검진' 탭으로 이동

시스템 메인화면

종사자로 등록된 연구실 관리 화면



연구실관리
안전교육
안전점검·진단
화학물질·가스
특수건강검진
평가관리
건강관리
시설·환경관리
위생·폐기·설비
종합관리

특수건강검진

1. 특수건강검진 등록 기간 : 2024.04.18~2024.05.10, 10월 유해인자 적중 : 5명

2. 등록

성명	학사(번)	성별	신분	구분	건강결과	연구실명	유해인자/유해인자	유해인자(세부기준)	CAS No./사용빈도	관리
홍길동		남	연구원	연구원	미검진					등록

취급 중인
유해인자 선택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선택
유해인자 선택
유해인자

1. 선택

2. 선택

3. 선택

화학물질명	CAS No.	화학물질명	CAS No.
Benzene	71-43-2	Benzene	71-43-2
N,N-Dimethylaniline, 98...	121-69-7	N,N-Dimethylaniline, 98...	121-69-7
Potassium permanganate, EP, 500g	7722-64-7	Potassium permanganate, EP, 500g	7722-64-7

기능 및 절차

1. 화학물질 목록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 선택
2. 선택한 유해인자별 사용빈도를 선택
3. 완료 후 저장

<참고>

- 종사자로 등록된 연구실의 유해인자 정보를 모두 제공함
- 유해인자수는 최대 5개 선택가능
- 5개 이상의 유해인자 취급 시 선택 우선순위
 1. 특별관리물질
 2. 상시 취급하는 물질

유해인자 선택
완료 후 화면
및 수정

성명	학사(번)	성별	신분	구분	건강결과	연구실명	유해인자/유해인자	유해인자(세부기준)	CAS No./사용빈도	관리
			연구원	연구원	미검진					등록

기능 및 절차

1. 취급하는 유해인자 선택 완료 화면
2. 등록기간내에 유해인자 삭제 / 추가 등록가능